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4. 12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. 4. 5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. 4. 6.
- 다. 상정일자 : 제25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2. 4. 12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복지정책과장

가. 제안이유

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구민과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3) 지원 대상, 지원신청, 지원중지(안 제4조~제6조)
- 4) 위기가구 발굴 참여자 포상 및 사기진작(안 제7조~제8조)

3. 검토보고 (김동원 전문위원)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, 제14조 규정을 근거로 우리 구 복지사각지대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제출한 안건임.
-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,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
 -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정하였으며,
 -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기가정 지원 신청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아 적발될 경우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기가정 발굴에 대한 포상 및 참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을 규정하였고,
 -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기가구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금지하는 규정 등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현재 마포구에서는 22년도에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,

〈2022년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관련 예산 현황〉

세부사업	편성목	예산액(천원)	비고
복지대상자 발굴 지원(구비100%)	계	6,096	
	사무관리비	5,500	홍보물 및 활동매뉴얼 제작
	공공운영비	396	업무용 휴대폰 요금
동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(구비100%)	계	32,930	
	행사운영비	22,800	이웃살피미, 동복지대학 운영
	시책추진업무추진비	3,130	
	사회복지사업보조	7,000	우리동네 행복+ 운영

-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도 위기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2021년에 동작구, 강동구, 성동구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발굴 건당 1건당 3만원에서 5만원을 지역화폐 및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되 동일제보자는 연 최대 10만원에서 30만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음.

□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

구 분	동 작 구	강 동 구	성 동 구
조 례 명	위기가구발굴지원에관한조례 (의원 발의)	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	위기가구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
제 정 일	2021.4.15	2021.4.28	2021.9.16
주요내용	- 구청장의 책무 - 신고의무 및 지원 신청 등 - 민관 협력 - 포 상	- 신고대상 - 지급기준 및 시기 - 지급제외 - 지급신청 및 환수	- 구청장의 책무 - 신고의무 및 지원신청 등 - 민관협력 - 포 상
보상방법	미 정	1건당 3만원(지역화폐) (동일제보자 연 최대 30만원)	1건당 5만원(온누리상품권) (동일제보자 연 최대 10만원)
보상실적	-	5회	1회
'22년 예산액 (천원)	미 편 성	3,000	750
위기가구 기준	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) 책정 가구		

○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, 제14조 규정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을 장려하고 보상책 마련으로 구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기에,
- 우리 구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지역 위기가구 발굴사업이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이상 서초구 방배동의 모자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[참고자료]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제9조의2(위기가구의 발굴)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(이하 이 조에서 “위기가구”라 한다)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4. 7.>

1.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
2.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

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4조(민관협력)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,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、군수、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(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)에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.

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、군수、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: 없음